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9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조승래・이인선・강선우

정을호 • 박성훈 • 김기웅

장동혁 • 이정문 • 우재준

박충권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 도록 함(안 제6조).
- 라.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 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 3.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그 이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

-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사용
-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체정보(얼굴·지문 ·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 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 다만,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인공지능이 판단 및 결정과는 무관한 절차만을 수행하는 경우
 - 2) 사람의 판단 및 결정을 분석, 검증 또는 비교하거나 보완하

기 위한 경우

-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 4.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 5.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7.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8.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9.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에 대한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인공지능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개발 중인 인공지능
 - 2.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 3. 학술 · 연구를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 제6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 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 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 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민간위원: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3.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 ⑨ 위원회는 국가기관등,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 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하 "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 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 가기관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와 제13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2.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3.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 4.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에 관한 사항
- 5.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6.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제6조제9항에 따른 권고등에 관한 사항
- 8. 고위험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한 사항
- 9.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 10. 인공지능윤리 원칙에 관한 사항
- 11.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을 포함한 인공지능 등 시책에 관한 사항
-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 계인인 경우
- ②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

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분석
- 2. 인공지능안전 관련 정책 연구
- 3. 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기준 · 방법의 연구
- 4. 인공지능안전 관련 기술 및 표준화 연구
-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 협력
- 6.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11조(인공지능윤리 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공지능윤리 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 · 공표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정신 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 항
-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 3.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 칙이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 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 · 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인공지능등에 관한 시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 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환경 조성
-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 망·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확산 지원
-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 5.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확보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 6.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협력, 인공지능윤리의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 2. 검 · 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 3. 검 · 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원
- 4. 검 · 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검 · 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검·인증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제14조(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 고지) ①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제15조(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 ①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또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고위험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책무)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 하는 자 또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운영
 - 2.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3.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데이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 4.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 운영
 - 5.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 6. 그 밖에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 제17조(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고지 및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적인 계산 또는 풀이 절차·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 2. 인공지능사업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단체
 -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1.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활용 과정에서 윤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2.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안전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감 독
- 4. 윤리원칙의 준수를 위한 해당 기관등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윤리지침 마련
- 6. 그 밖에 윤리원칙의 구현에 필요한 업무
-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민간자율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특정성(性)의 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지식을 갖춘 사람 및 해당 기관등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 · 인증등 지원
-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 3.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제6조제1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